

2019년도 인문한국(HK)지원사업 연차점검 편람(안)

2019. 5.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 주요사항 요약 ◆

구분	2018	2019	
지원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예산 : 12,037백만원(17개 연구소 이내) - '09~'12년 선정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예산 : 6,606백만원(10개 연구소 이내) - '10~'12년 선정 연구소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 제2조 4년제 일반대학 부설 (인문학분야)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3+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세부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분야 ▪ 해외지역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연구소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K연구인력 강의시수 제한 대학 자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및 규정이행 관련 심사 강화 - 인문학자 중심의 전공평가와 법학·행정학자로 구성된 행정평가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성과평가	연차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연구소('09,'10,'11년 선정) ▪ HK교수 정년트랙 임용의무 위반 및 사업성과가 계획에 비해 현저히 미달한 경우 협약해지 및 사업비 회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연구소('10,'11,'12년 선정) ▪ 좌동
	단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연구소('12년 선정) ▪ HK교수 정년트랙 임용의무 위반 및 사업성과가 계획에 비해 현저히 미달한 경우 협약해지 및 사업비 회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과제 없음
	총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과제('08년 선정) ▪ 총괄평가 결과 및 '19년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HK*2유형에 지원자격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과제('09년 선정) ▪ 좌동

목 차

■ 2019년도 인문한국(HK)지원사업 연차점검 편람(안)	
I . 2019년도 연차점검 지표 및 등급	1
II . 2019년도 연차점검 지표별 점검방법	2
1. 규정 및 제도	2
2. HK교수 제도의 적정성	5
3. 학교지원의 적정성	7
4. 연구활동의 적정성	9
5. 예산집행의 적정성	11
6. 개선노력 정도	12
7. 차년도 계획	13
■ [부록]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15

2019년도 인문한국(HK)지원사업 연차점검 편람(안)

I. 2019년도 연차점검 지표 및 등급

점검 영역	점검 항목	점검지표	점검 방법	점검 등급
규정 및 제도	인사규정의 합리성 및 이행의 적정성	- HK연구인력(HK교수 제외)의 임용, 처우, 평가를 위한 학내 및 연구소 자체 절차 및 규정의 합리성	정성	우수/보통/미흡
		- HK연구인력(HK교수 제외)의 임용, 처우, 평가를 위한 학내 및 연구소 자체 절차 및 규정 이행의 적정성	정성	
	연구·사업관리 규정의 합리성 및 이행의 적정성	- 연구 및 사업관리규정의 합리성	정성	
		- 연구 및 사업관리규정 이행의 적정성	정성	
HK교수 제도의 적정성	HK교수 인사 규정의 합리성 및 이행의 적정성	- HK교수의 임용, 처우, 승진, 평가를 위한 학내 및 연구소 자체 절차 및 규정의 합리성	정성	우수/보통/미흡
		- HK교수의 처우, 승진, 평가를 위한 학내 및 연구소 자체 절차 및 규정 이행의 적정성	정성	
		- 계획 대비 HK교수 임용의 적정성	정량/정성	
학교 지원의 적정성	연구활동 지원의 적정성	- HK연구인력에 대한 학교의 하드웨어적 지원의 적정성	정성	우수/보통/미흡
		- HK연구인력 연구활동에 대한 학교지원의 우수성	정성	
	행정지원의 적정성	- 연구수행을 위한 행정직원의 채용 여부	정량	
		- 연구수행을 위한 행정인력지원의 적정성	정성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정도	- 학교재정지원(대응자금 및 기금 등)의 적정성	정성	
- 학교재정지원(대응자금 및 기금 등)의 활용성	정성			
연구 활동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 계획 대비 HK연구인력(HK교수 제외)의 확충 실적	정량	우수/보통/미흡
		- 연구 아젠다 수행을 위한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정성	
		- HK연구인력의 연구 아젠다 수행을 위한 수월성 정도	정성	
	아젠다 관련 연구의 심화노력	- 아젠다 중심의 연구심화를 위한 노력 : 연구학술 활동, 사회 확산 및 소통, 자료화, 국제화 ※ 연구소 대표실적(논문, 저서 등 5편 이내) 포함	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적절성	- 아젠다 수행, 연구소 특성화를 위한 예산사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정성	우수/보통/미흡
개선노력 정도	개선노력	- 지적 사항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개선노력 정도	정성	우수/보통/미흡
차년도 계획	차년도 계획의 적정성	- 단계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부합성	정성	우수/보통/미흡
		- 단계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실현 가능성	정성	
종합점검 결과				우수/보통/미흡

※ 정량적 점검과 정성적 점검을 병행

※ 각 항목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결과 제출

(위 평가영역을 포함하여, 연구소의 재정적 자립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각종 노력 등의 사항을 기술)

※ 점검영역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이들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종합 점검등급 도출

II. 2019년도 연차점검 지표별 점검 방법

1. 규정 및 제도

《점검방향》

- HK사업의 단계별 목표¹⁾를 위하여 연구소가 제정 및 개정한 규정 및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특히 연구소의 규정이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한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점검함
- 점검등급 적용 : 우수/보통/미흡

1-1 인사규정의 합리성

<점검요소>

- HK연구인력(HK교수 제외)의 임용(재임용 포함)을 위한 학내, 연구소 자체 절차 및 규정의 적정성
- HK연구인력(HK교수 제외)의 처우, 평가(심사) 등 학내, 연구소 자체 절차 및 규정의 합리성

<점검방법>

- HK연구인력(HK교수 제외)의 임용(재임용 포함)과 관련된 규정 및 제도의 실태에 대하여 정성적 점검
- HK연구인력(HK교수 제외)의 처우, 평가(심사) 등 절차 및 규정의 실태에 대하여 정성적 점검

<등급부여 기준>

- HK연구인력(HK교수 제외)의 임용(재임용 포함)을 위한 학내, 연구소 자체 절차 및 규정의 적정성
 - 지표의 점검에서 HK교수를 제외하여 2-1 지표와의 중복 점검을 배제함
 - ① 임용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
 - ② 임용과정의 공정성 및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과의 부합성 여부
- HK연구인력(HK교수 제외)의 처우, 평가(심사) 등 학내 및 연구소 자체 절차 및 규정의 합리성
 - 지표의 점검에서 HK교수를 제외하여 2-1 지표와의 중복 점검을 배제함
 - ① 연구인력(HK교수 제외)에 대한 처우 규정의 실태
 - ② 연구인력(HK교수 제외)의 평가 규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 ③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과의 부합성 여부

* 인사규정의 합리성에 대한 점검은 연차점검의 종합결과에 반영되며, 연차점검과는 별도로 HK사업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연구소에 대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

1) 1단계(1~3년) 목표 : HK사업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조성 단계
2단계(4~6년) 목표 : HK사업의 연구심화 및 도약 단계
3단계(7~10년) 목표 : HK사업의 지속을 위한 연구소 정립 단계

1-2 인사규정 이행의 적정성

<점검요소>

- HK연구교수의 임용, 처우 등 인사규정 및 제도 이행의 적정성

<점검방법>

- 인사규정 및 제도의 이행정도에 대하여 정성적 점검

<등급부여 기준>

- HK연구교수의 임용, 처우 등 인사규정 및 제도 이행의 적정성
 - 인사규정 및 제도 이행의 합리성 및 적정성의 내용 수준
 - ① 임용절차, 규정의 적용, 운영의 적정성 및 공정성
(출신학교 배정 원칙의 준수 여부 등)
 - ② HK연구교수에 대한 처우에 관한 규정의 이행정도
 - ③ HK연구교수의 평가 규정 이행의 합리성 및 공정성
 - ④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이행여부

* 인사규정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연차점검의 종합결과에 반영되며, 연차점검과는 별도로 HK사업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연구소에 대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

1-3 연구·사업관리규정의 합리성

<점검요소>

- 연구 및 사업관리 규정의 합리성

<점검방법>

- HK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관리규정의 합리성을 정성적 점검
- HK사업을 위한 연구 및 사업관리규정을 운영의 적절성을 정성적 점검

<등급부여 기준>

- 연구 및 사업관리 규정의 합리성
 - ① 세부 연구 및 사업과제 발굴시스템의 합리성
 - ② 세부 연구 및 사업관리를 위한 연구소 규정의 합리성
 - ③ 연구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연구소 규정의 적합성
 - ④ 과제수행을 위한 예산사용 규정의 적합성

* 연구·사업관리규정의 합리성에 대한 점검은 연차점검의 종합결과에 반영되며, 연차점검과는 별도로 HK사업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연구소에 대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

1-4 연구·사업관리규정 이행의 적정성

<점검요소>

- 연구·사업관리 규정 및 기타 제반 규정 이행의 적정성

<점검방법>

- 연구·사업관리를 위한 규정 및 제도의 이행정도에 대하여 정성적 점검

<등급부여 기준>

- 연구·사업관리 규정 및 제도의 이행 적정성
 - ① 연구 및 사업과제 발굴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 ② 연구 및 사업관리를 위한 연구소의 규정 이행 여부
 - ③ 연구소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의 적합성
 - ④ 연구 및 사업관리를 위한 규정 및 제도 이행의 적합성
 - ⑤ 과제심의, 중간평가, 결과평가 시행여부 및 적합성
 - ⑥ 과제수행을 위한 예산사용규정 운영의 적합성

* 연구·사업관리규정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연차점검의 종합결과에 반영되며, 연차점검과는 별도로 HK사업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연구소에 대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

2. HK교수 제도의 적정성

《점검방향》

- HK사업의 인적 기반 조성의 근간이 되는 HK교수 인사규정의 합리성 및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HK사업의 인적 기반을 구축함
- 점검등급 적용 : 우수/보통/미흡

2-1 인사규정의 합리성

<점검요소>

- HK교수의 임용(재임용, 정년보장 임용 포함)을 위한 학내 및 연구소 자체 절차 및 규정의 적정성
- HK교수의 처우, 승진, 평가(심사) 등 학내, 연구소 자체 절차 및 규정의 합리성

<점검방법>

- HK교수의 임용(재임용, 정년보장 임용 포함)과 관련된 규정 및 제도의 실태에 대하여 정성적 점검
- HK교수의 처우, 승진, 평가(심사) 등 절차 및 규정의 실태에 대하여 정성적 점검

<등급부여 기준>

- HK교수의 임용(재임용, 정년보장 임용 포함)을 위한 학내, 연구소 자체 절차 및 규정의 적정성
 - ① 임용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
 - ② 임용과정의 공정성 및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과의 부합성 여부
- HK교수의 처우, 승진, 평가(심사) 등 학내, 연구소 자체 절차 및 규정의 합리성
 - ① HK교수에 대한 처우 규정의 실태
 - ② HK교수의 정년보장 규정의 적정성 여부
 - ③ HK교수의 승진, 평가 규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 ④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과의 부합성 여부

* 인사규정의 합리성에 대한 점검은 연차점검의 종합결과에 반영되며, 연차점검과는 별도로 HK사업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연구소에 대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

2-2 인사규정 이행의 적정성

<점검요소>

- HK교수의 임용, 승진, 정년보장, 처우 등 인사규정 및 제도 이행의 적정성

<점검방법>

- 인사규정 및 제도의 이행정도에 대하여 정성적 점검

<등급부여 기준>

- HK교수의 임용, 승진, 정년보장, 처우 등 인사규정 및 제도 이행의 적정성
 - ① 임용절차, 규정의 적용, 운영의 적정성 및 공정성
(출신학교 배정 원칙의 준수 여부 등)
 - ② HK교수에 대한 처우에 관한 규정의 이행정도
 - ③ HK교수의 정년보장 규정 이행의 적정성
 - ④ HK교수의 승진, 평가 규정 이행의 합리성 및 공정성
 - ⑤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에 따른 이행여부

* 인사규정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연차점검의 종합결과에 반영되며, 연차점검과는 별도로 HK사업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연구소에 대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

2-3 계획 대비 HK교수 임용의 적정성

<점검요소>

- HK교수 임용 계획의 적정성
- HK교수 임용의 적정성
- HK사업계획 대비 HK교수 임용실적

<점검방법>

- HK사업계획 대비 HK교수 임용실적을 고려한 정량적 점검

<등급부여 기준>

- HK사업계획 대비 HK교수 임용실적의 비율을 고려한 등급의 적용
 - ① 연차별 HK교수 임용계획의 이행 실적
 - ② HK교수 임용을 위한 제도적 및 재정적 현실성

* HK교수임용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연차점검의 종합결과에 반영되며, 연차점검과는 별도로 HK사업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연구소에 대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

3. 학교 지원의 적정성

《점검방향》

- HK사업의 단계별 목표를 위하여 학교의 연구활동지원,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의 적정성을 점검함
- 점검등급 적용 : 우수/보통/미흡

3-1 연구활동 지원의 적정성

<점검요소>

- HK연구인력의 연구활동을 위한 학교 지원의 적정성

<점검방법>

- HK연구인력의 연구활동을 위한 학교의 하드웨어적 지원의 적정성을 최소기준 준수 및 우수성, 적정성에 대하여 정성적 점검을 실시함

<등급부여 기준>

- HK연구인력에 대한 학교의 하드웨어적 지원의 적정성
 - ① HK연구인력의 전용공간 지원 수준
 - ② HK교수의 독립 연구공간 확보 여부
 - ③ HK연구인력을 위한 공동공간의 지원 여부
- HK연구인력의 연구활동에 대한 학교지원의 우수성
 - ① HK교수의 독립 연구공간의 적정성 및 우수성
 - ② 계획 대비 학교지원의 적정성 및 우수성
 - ③ 기타 HK연구인력을 위한 학교지원의 우수성

3-2 행정지원의 적정성

<점검요소>

- 연구수행을 위한 행정인력 지원의 적정성
- 행정인력의 최소 지원의 이행여부(정량적 점검)

<점검방법>

- 연구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인력의 지원 여부에 대하여 정량적 점검을 실시함
- 행정직원의 성격, 역할, 추가인력 지원 등에 대하여 정성적 점검을 실시함

<등급부여 기준>

- 연구수행을 위한 행정직원의 채용 여부와 관련된 정량적 점검
 - 행정인력 지원의 내용 수준
 - ① 대형은 2명, 중형 및 소형은 1명 이상의 의무적 행정직원 채용 여부
- 연구수행을 위한 행정직원에 대한 정성적 점검
 - 행정직원에 대한 정성적 점검 내용 수준
 - ① 행정직원의 근무행태(전일제, 시간제 등)
 - ② 행정직원의 성격(전임직원, 조교, 보조원 등)
 - ③ 행정직원의 업무 내용

3-3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 정도

<점검요소>

- 학교의 재정지원(대응자금 및 기금 등)의 적정성
- 학교의 재정지원(대응자금 및 기금 등)의 활용성

<점검방법>

- 학교 재정지원(대응자금 및 기금 등)의 계획 대비 지원 정도, 활용내용 등에 대하여 정성적 점검

<등급부여 기준>

- 학교의 재정지원(대응자금 및 기금 등)의 적정성
 - ① 당초 확약한 대응자금의 목표액 대비 지원액
 - ② 당초 예상한 기금 등의 계획 대비 모금액
- 학교의 재정지원(대응자금 및 기금 등)의 활용성
 - ① 대응자금 및 기금의 활용내용
 - ② 기금 내용의 건전성과 활용내용
- 당초 대응자금을 전혀 확약하지 않은 연구소의 경우, HK사업 종료 후 연구소의 재정적 자구노력 정도와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

* 당초 대응자금을 전혀 확약하지 않은 연구소의 경우, 점검단에서 결정한 기본점수 부여

* HK사업 종료 후 연구소의 재정적 자구노력 정도와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

4. 연구활동의 적정성

《점검방향》

- HK사업의 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구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참여 연구인력 구성의 적합성과 전문성 및 수월성 정도를 점검하고, 연구주제를 심화하기 위한 노력 정도를 점검하여 HK사업의 연구심화 및 도약을 유도함
- 점검등급 적용 : 우수/보통/미흡

4-1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점검요소〉

- 연구 아젠다 수행을 위한 연구소의 참여 연구인력 활용 정도
- 연구 아젠다 수행을 위한 참여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원의 연구 아젠다 수행을 위한 수월성

〈점검방법〉

- 계획 대비 참여연구원(HK교수 제외)의 확충 실적
- 연구 아젠다의 수행을 위한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성적 점검
- 채용된 연구인력의 연구업적을 점검하여 수월성에 대하여 정성적 점검

〈등급부여 기준〉

- 계획 대비 참여연구원(HK교수 제외)의 확충 실적
- 연구 아젠다 수행을 위한 참여 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활용도
 - ① 연구 아젠다 및 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참여 인력의 구성현황
 - ② 연구주제별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과제 수행 능력
 - ③ 연구주제에 따른 단독·공동 및 협동연구 구성의 적합성
- HK연구인력의 연구 아젠다 수행을 위한 수월성 정도
 - HK연구인력의 채용 전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 아젠다와의 적합성 여부
 - HK연구인력의 HK사업 연구실적과 아젠다와의 적합성 여부

4-2 아젠다 관련 연구의 심화 노력

<점검요소>

- 아젠다 관련 연구 심화를 위한 연구소의 노력 정도

<점검방법>

- 아젠다 관련 연구 심화를 위한 연구소의 노력 정도를 점검하여 정성적 점검
- 연구소 대표실적(논문, 저서 등 5편 이내)을 참고하여 정성적 점검

<등급부여 기준>

- 아젠다 관련 연구 심화를 위한 연구소 노력의 우수성 내용 수준
 - 연구학술활동과 관련, 아젠다 관련 연구 심화를 위한 연구소 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사회 확산 및 소통과 관련, 아젠다 관련 연구 심화를 위한 연구소 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자료화/DB화 활동과 관련, 아젠다 관련 연구 심화를 위한 연구소 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지역학 연구소의 경우에만 제시)
 - 국제화 활동과 관련, 아젠다 관련 연구 심화를 위한 연구소 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인문학 연구소 중 아젠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화를 ‘토착화’와 같은 다른 중점사업으로 대체 가능)

5. 예산집행의 적정성

《점검방향》

- HK지원사업의 지원예산이 아젠다의 성격 및 연구성과와 도약을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함
- 점검등급 적용 : 우수/보통/미흡

5-1 예산집행의 적절성

〈점검요소〉

- HK사업 지원예산의 아젠다 수행 및 연구소 특성화를 위한 사용의 적정성

〈점검방법〉

- 아젠다 수행 및 연구소 특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정성적 점검

〈등급부여 기준〉

- HK사업 지원예산의 아젠다 수행 및 연구소 특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
 - HK사업 지원예산 중 아젠다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① 연구학술, ② 사회 확산 및 소통, ③ 자료화 (지역학 연구소의 경우에만 제시), ④ 국제화(인문학 연구소 중 아젠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토착화’와 같은 다른 중점사업으로 대체 가능)로 구분하여, 예산 사용의 적정성 내용 수준 점검
 - ① 아젠다 수행 및 사업단 특성화를 위해 사용한 예산의 적정성
 - ② 전용 및 이월의 적정성

*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은 연차점검의 종합결과에 반영되며, 연차점검과는 별도로 HK사업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연구소에 대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

6. 개선노력 정도

《점검방향》

- 연구소에 대한 한국연구재단 및 교육부의 행정조치, 컨설팅 개선권고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한 연구소의 행정적, 제도적 개선노력 정도를 점검하여 HK사업의 목표를 달성함
- 점검등급 적용 : 우수/보통/미흡

6-1 개선노력

〈점검요소〉

- 연구소에 대한 재단 및 교육부의 행정조치, 컨설팅 개선권고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개선 사항

〈점검방법〉

- 연구소에 대한 한국연구재단 및 교육부의 행정조치, 컨설팅 개선권고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성적 점검

〈등급부여 기준〉

- 연구소에 대한 지적사항의 개선노력
 - 연구소에 대한 지적사항의 개선노력의 내용 수준
 - ① 연구소에 대한 한국연구재단 및 교육부의 행정조치, 컨설팅 개선권고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

* 개선노력 정도에 대한 점검은 연차점검의 종합결과에 반영되며, 연차점검과는 별도로 HK사업 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연구소에 대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

7. 차년도 계획

《점검방향》

- HK사업의 단계별 단계계획에 따라 차년도 연구소의 연구·사업의 계획이 적정성을 점검하여 차년도 HK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함
- 점검등급 적용 : 우수/보통/미흡

7-1 차년도 계획의 적정성

<점검요소>

- 각 연구소의 단계별 단계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적정성

<점검방법>

- 각 연구소의 단계별 단계계획에 따른 아젠다 수행 및 기반조성의 실행계획과 연차별 계획의 부합성과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정성적 점검

<등급부여 기준>

- 단계별 단계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부합성
 - ① 아젠다 수행을 위한 단계별 단계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부합성
 - ② 연구소 기반조성을 위한 단계별 단계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부합성
- 단계별 단계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의 실현가능성
 - ① 아젠다 수행을 위한 단계별 단계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실현가능성
 - ② 연구소 기반조성을 위한 단계별 단계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부록】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2017. 12. 4

한국연구재단

목 차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및 정의
-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3조 HK연구소의 유형
- 제4조 계획의 수립
- 제5조 규칙의 적용 범위

제2장 인문한국 관리위원회

- 제6조 설치
- 제7조 기능
- 제8조 구성

제3장 HK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참여 조건
- 제10조 유형별 지원 사업비의 범위 및 지원 기간 등
- 제11조 참여인력 구성
- 제12조 연구소장
- 제13조 일반연구원
- 제14조 HK교수
- 제15조 HK연구교수
- 제16조 연구보조원
- 제17조 전담행정직원
- 제18조 참여 기관
- 제19조 협력 기관
- 제20조 연구소 운영
- 제21조 성과확산총괄센터

제4장 대학(교)의 장, 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 및 HK

교수, HK연구교수의 임용과 대우

- 제22조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임용
- 제23조 대우 규정 제정
- 제24조 연구 환경 보장
- 제25조 HK교수 정년보장
- 제26조 사업 수행
- 제27조 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 제28조 협약의 체결
- 제29조 협약의 변경
- 제30조 협약의 해약

제6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제31조 전문가 자문
- 제32조 자체평가
- 제33조 수시점검
- 제34조 연차점검
- 제35조 단계평가
- 제36조 총괄평가
- 제37조 주의 및 경고 처분
- 제38조 이의 제기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제39조 사업비의 구성
- 제40조 사업비의 계정관리
- 제41조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제42조 사업비의 집행
- 제43조 국고지원금
- 제44조 대응부담금
- 제45조 항목 간 예산 변경
- 제46조 사업비 이월 허용 범위
- 제47조 예금 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 제48조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
- 제49조 홈페이지 운영 등

제8장 행정사항 및 보칙

- 제50조 보고 의무
- 제51조 정보의 공개
- 제52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부칙

인문한국(HK)지원사업 관리운영규칙

제정 2008. 11. 26.
2009. 6. 24.
2010. 11. 12.
2011. 9. 16.
2014. 4. 25.
개정 2017. 12. 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처리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인문한국지원사업”(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HK’는 ‘인문한국’의 영어 표현인 Humanities Korea의 머리글자를 딴 약칭을 말한다.
2. ‘아젠다’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각 연구소 사업계획서의 향후 10년간의 연구주제를 말한다.
3. 사업계획서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신청서(Ⅰ)과 신청서(Ⅱ)를 말한다.
4. ‘연구단’은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연합하여 참여한 형태를 말한다.
5. ‘HK연구소(원)’는 HK사업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소(원)를 말한다.(이하 “HK연구소”라 한다.)

제3조(HK연구소의 유형) HK연구소는 연구 분야에 따라 인문과 해외지역으로, 지원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매년 HK사업의 추진 방향, 사업 예산,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계획에 의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② 장관은 확정된 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2. 선정 연구소에 대한 연차(단계)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와 일정
3. 신규 연구소에 대한 선정 계획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

제5조(규칙의 적용 범위) HK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교, HK연구소 및 참여인력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인문한국관리위원회

제6조(설치) 전문기관은 HK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문한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 경고 처분 등에 대한 사항 심의
2. HK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주요사항 자문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문학 및 인접 학문분야 전공자 또는 대학행정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전문기관 직원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교육부 관계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문기관의 HK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3장 HK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참여 조건) HK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장은 사업 신청 전 교(학)칙에 명시된 설립 근거에 의하여 연구소 설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 기간) 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추진상황 및 연차별, 단계별 평가, 수시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대형 인문연구소 : 연 10억 원~15억 원, 10년(3년+3년+4년)
2. 중형 인문연구소 : 연 5억 원~8억 원, 10년(3년+3년+4년)
3. 중형 해외지역연구소 : 연 5억 원~8억 원, 10년(3년+3년+4년)
4. 소형 해외지역연구소 : 연 3억 원 이내, 10년(3년+3년+4년)

제11조(참여인력 구성) ① 대학교의 장은 HK연구소의 참여 인력을 연구소장, 일반연구원, HK교수(2007년도, 2008년도 신청요강 상의 HK연구교수), HK연구교수(2007년도, 2008년도 신청요강 상의 HK연구원), 연구보조원, 전담 행정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HK사업 선정 후 10개월 이내에 HK교수와 HK연구교수를 합하여 다음 각 호대로 임용 완료하여야 한다.

1. 대형 연구소는 10명 이상
2. 중형 연구소는 5명 이상
3. 소형 연구소는 3명 이상

③ 대학교의 장은 사업 선정 시 전문기관이 승인한 계획서에서 제시한 목표 인원대로 HK교수 및 HK연구교수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때 HK교수는 학사 및 박사학위 취득 기관을 기준으로 동일교 출신자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기관을 기준으로 동일교 출신자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하나,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동일교 출신일지라도 인문학이 아닌 타학문분야를 전공한 학위 취득의 경우 타교 출신으로 간주한다.

제12조(연구소장) ① 대학교의 장은 HK사업 주관연구책임자로서 탁월한 연구 경력 및 경영능력을 지닌 연구소장(연구단의 경우 참여기관 대표도 해당)을

임명하고, 연구소장은 아젠다 설정, 연구소 기반 조성, 인력 육성 및 연구소 운영을 총괄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소장이 아닌 경우 사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소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HK사업비의 예산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운영비용(본인의 연구활동비 포함)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대학교의 장은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 단계별 지원기간(3년+3년+4년)동안 소장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악화,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소장은 HK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주도 대형(연간 2억원 이상)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⑥ 대학교의 장은 연구소장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장의 강의 시수 조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연구원) ① 연구소장은 HK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HK사업 참여자로 전문기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일반연구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휴직중인 교수

2. 연구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다만, HK사업 수행이 가능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정부의 연구참여 제한 조치 기간 내에 있는 교수 및 연구자

② 일반연구원에게는 연구활동비를 포함한 사업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HK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

③ 1단계에서는 선정 당시 사업계획서 상의 일반연구원의 수를 감소할 수 없다. 다만, 2단계 이후 일반연구원의 수 감소는 각 단계 시작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④ 연구소장이 일반연구원을 변경할 경우 HK사업 신청 요강에서 제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일반연구원의 임기는 단계별 사업기간(3년+3년+4년)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단계별 사업기간 내에 일반연구원이 HK사업 참여를 중단할 경우, 단계별

논문 게재의 의무는 후임 연구자와 공동 책임으로 한다.

⑥ 일반연구원은 해당 연구소의 HK사업 수행에 성실히 참여하며, 단계별로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최소한 1편 이상의 아젠다 관련 논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제14조(HK교수) ① HK교수는 최초 임용시점부터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정년트랙 교원으로서 사업 완료 이후에도 그 직위 및 권리가 유지되는 교수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소에 상근하며 HK사업 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

1. 사립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면서 정년트랙으로 임용된 자
2. 국공립대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학칙에 의해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무기계약 기금교수 등으로 임용된 자. 다만,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산 확보 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②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에 대하여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을 제외한 보수, 연구실 제공, 시설이용, 후생복지 및 기타 처우는 동일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의 경우에는 국공립대 보수수준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의 임면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면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학교의 장은 이직, 퇴직 등으로 인하여 HK교수 결원 발생 시, 발생시점 이후 다음 학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HK교수를 충원하여야 한다. (신설)

제15조(HK연구교수) ① 대학교의 장은 HK연구교수를 HK연구소 소속으로 임용하여 연구소에 상근하며 HK사업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대학교의 장은 HK연구교수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학술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전임연구인력 수준에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는 연구 능력에 따라 기준액의 10%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대학교의 장(또는 연구소장)은 HK연구교수의 임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임면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보조원) ① 대학교의 장(또는 연구소장)은 학부생, 대학원생 또는 수료자, 학사급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 중에서 HK사업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의 지휘에 따라 연구보조활동에 전념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보조원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학술지원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지급 받는 보수를 포함하여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보조원이 졸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신청 당시의 신분을 연구 종료 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취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전담행정직원) 대학교의 장은 교비 등 대학 재원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행정직원(대형연구소는 2인 이상, 중형 및 소형연구소는 1인 이상, 연구단 형태는 2인 권장)을 HK연구소에 배치하여 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전담행정직원은 정식 직원이어야 하고 조교, 연구원 및 재학생은 행정직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참여 기관) ① 대학교의 장(또는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과 연구 실적이 우수한 중·소규모 연구소를 참여기관으로서 HK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참여 기관은 인문학분야 대학부설연구소와 함께 연구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소 간의 역할 및 의무분담내역(예산배분, 인력임용 및 정년보장 계획 포함)을 포함하여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된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단일 대학부설연구소가 주관이 된다.

③ 주관 대학부설연구소가 소속된 대학교가 인력 임용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총괄책임을 진다.

④ 참여 기관은 인력, 예산 집행 등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⑤ 주관대학부설연구소와 참여기관이 동일 대학교 소속일 경우 통합계획, 서로 다른 대학교 소속일 경우 통합운영계획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 기관) ① 대학교의 장은 HK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 군, 구
2. 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체부설연구소, 지자체출연연구소
3. 비정부기구: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공익법인
4. 언론기관: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과 「방송법」 및 「전파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법인
5.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시, 도교육청
6. 기타 기관: 박물관, 도서관, 문화원, 기타 연구단체 및 기관

② 협력기관은 HK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소 운영) ① 대학교의 장은 HK연구소 운영의 제도화와 조직 체계의 개선을 위해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HK연구소 소속 연구인력의 관리를 위하여 대학 인사위원회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HK연구교수의 경우 연구소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대학교의 장은 HK교수 및 HK연구교수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보장할 수 있는 연구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대학교의 장은 HK연구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연구성과 및 연구소 운영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대학교의 장은 HK연구소 특성에 맞는 국제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국제적 수준 혹은 전국 규모의 학술지 발간 등 해당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대학교의 장은 유관 기관과의 정기적 협의 및 학술 대회 등의 개최를 통한 연계 활동을 강화하여 지원의 성과가 학문적·사회적으로 확대·재생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학교의 장은 DB구축, 자료서비스, 시민강좌 등을 통하여 연구 성과의 보급 및 확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확산총괄센터) 장관은 HK연구소 간의 성과 공유 및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성과확산총괄센터’를 둘 수 있다.

제4장 대학교의 장, 연구소장의 권한과 책임 및 HK교수, HK연구교수의 임용과 대우

제22조(HK교수 및 HK연구교수 임용) ① 대학교의 장은 HK연구소 선정 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용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HK교수는 소속 대학교의 전임 교원 임용 규정 및 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른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학교의 장은 사업 신청 시 대학이 제출한 연도별 임용계획에 따라 HK교수 의무 확보 인원 전원을 임용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④ HK연구교수는 공개 채용하여야 하며, 연구소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23조(대우 규정 제정) 대학교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를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 HK연구소에 공통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 환경 보장) ① 대학교의 장은 연구소 시설 및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에게 동일 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독립 연구실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학교 및 소속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의 장은 HK연구교수에게 1인당 최소 4.95㎡ 이상의 연구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학교 및 소속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5조(HK교수 정년보장) ① 대학교의 장은 HK교수에 대해서 학과의 전임교원과 같은 발전 단계(조교수-부교수-정교수)를 제도화하는 규정 또는 규정 개정 계획과 단계적 정년보장 계획(구체적 예산확보 계획 포함)을 신청 시 제출하고 선정 후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HK교수를 제1항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에 따라 정년트랙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보장 확정 전에는 심사 등을 거쳐 재임용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대학교의 장은 10년차 사업 종료 시점 기준으로 간접비 및 인센티브를 제외한 최대 연간 국고지원금 1.5억원당 1명 이상의 정년보장 직위를 연구소 소속으로 대학교 규정상 확보하여야 한다.

④ 대학교의 장은 신청 시 제출한 HK교수 정년보장 계획, 학교 자체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정년보장 심사를 해야한다. 다만, 사업 종료 시까지 규정·일정 등의 사유로 정년보장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사업 종료 후에 HK교수가 정년 트랙 교원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대학교의 장은 신청 시 HK교수와 HK연구교수의 임용 및 활용, 정년보장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약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립대학교는 이와 함께 이 사회의 의결서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학교의 장은 기 지급 받은 국고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이 사업기간 내에 대학의 HK교수 정년 보장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취소할 경우 대학교의 장은 기 지급받은 국고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국공립 대학교의 장은 교육공무원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하여 HK교수를 교육공무원(연구소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학교의 자구노력을 감안하여 사업기간 중 해당 인건비 재원은 사업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사업 수행) 대학교의 장과 연구소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시 또는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수행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제27조(연구소장의 권한 및 책임)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지역인문학센터 협력 및 지원
6.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5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28조(협약의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선정된 연구소가 소속된 대학교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소장과 정해진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사용에 관한 통계자료의 제출
4. 학술활동 결과(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학술활동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학술활동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0. HK교수 및 HK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
11. 기타 HK연구소의 유지 조건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제29조(협약의 변경)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교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 및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 수행 상 협약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0조(협약의 해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소장(참여 연구원 포함) 또는 대학교의 장이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연구소장 또는 대학교의 장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연구과제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및 HK연구소가 개선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5.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대학교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협약 해약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약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대학교의 이의 제기 현황 및 그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협약이 해약된 대학교의 장은 협약해약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된 국고지원금의 반납 및 대학교의 대응 부담금 사용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자 또는 대학교 및 연구소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장관은 제5항에 의한 사업비 정산 시, 연구소 정산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HK연구교수 퇴직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반납 받을 수 있다.
 - ⑦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받은 국고지원금을 다른 연구소에 지원하거나 기타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제31조(전문가 자문)** ① 전문기관의 장은 HK연구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자문단은 각 학문분야별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연구소장은 필요 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자문 결과를 해당 HK연구소의 연차점검, 단계평가 및 총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자체평가) ① 대학교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HK연구소에 대한 대학교 차원의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② 자체평가는 HK연구소 운영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의 장과 연구소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연구소장은 제34조, 제35조, 제36조에 의한 연차점검, 단계평가, 총괄평가 보고서 제출 시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시점검) 전문기관은 HK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구소의 사업 수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연차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연간 사업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연차점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학교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전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차점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도별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면담 또는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HK교수(정년트랙) 임용 등 협약사항 이행 여부

2. 사업추진상황 및 성과달성 정도

3. 사업비 집행 실적

4. 기타 사업추진 관련 주요 사항

③ 전문기관은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하위 연구소 지원예산을 10% 범위 내에서 삭감하여 상위 연구소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 연계, 행정조치(주의, 경고, 협약해약, 사업비 회수 등)를 할 수 있다.(신설)

제35조(단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HK연구소의 3년차 및 6년차 사업기간

종료 전에 단계별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단계평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학교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전에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계평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실적보고서에 대한 서면 및 면담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HK교수(정년트랙) 임용 등 협약사항 이행 여부
2. 사업추진상황 및 단계 내 성과달성 정도
3. 사업비 집행 실적
4. 기타 사업추진 관련 주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단계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④ 장관은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대해서는 연구소간 평가결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HK교수 정년트랙 임용의무 위반 및 사업 성과가 계획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경우
2. 평가결과 만점의 70% 미만을 득점한 경우
3. 평가결과 하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⑤ 장관은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소의 경우, 당해 연도의 신규 신청 연구소와 경합하여 다음 단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제4항의 지원 중단으로 발생하는 예산을 사업성과가 우수한 연구소 또는 신규 연구소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총괄평가) ① 전문기관은 HK연구소의 최종 사업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최종 년도에 총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총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최종 지원연도 연구개시일 이전에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의 장은 사업에 대한 총괄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분석·평가하여 연구소별 총괄평가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총괄보고서에는 HK교수의 정년트랙 임용 결과 및 정년보장 완료 결과가 적시되어야 하며, 사업 기간 내 정년보장이 완료 되지 못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향후 정년보장 완료 계획(예산 확보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한다)이 명시되어야 한다.

⑤ <삭제>

제37조(주의 및 경고 처분)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지적사항 등을 근거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은 HK연구소는 시정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의 2번은 경고 1회로 간주하며, 사업기간 중 동일 사안으로 경고를 3회 받거나 누적 경고가 5회를 초과할 경우 장관은 해당 HK연구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3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된 경우, 대학교의 장은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이의 제기) ① 대학교의 장은 수시점검, 연차점검, 단계평가, 총괄평가 내용 및 이에 대한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교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39조(사업비의 구성) 사업비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국고지원금

2. 대학교 대응부담금 : 대학발전기금 또는 법인 전입금 등에서 HK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경비(입학금, 수업료는 제외한다)

제40조(사업비 계정관리) ① 대학교의 장은 사업비에 대하여 연구소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국고지원금과 대응부담금의 재원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비

회계에 편성된 대응부담금 및 HK교수 인건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서에 기재된 최초사업개시일자부터 만 1년이 되는 일자까지로 한다.

제41조(사업비집행계획 수립) ① 연구소장은 매 사업연도 시작 60일 이전에 당해 사업 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집행계획을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및 「HK사업 세부시행계획」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수립하고, 전문기관이 요청할 때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전문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소관 전체 HK연구소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대학교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집행계획 제출 시 전문기관이 연도별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계획 등의 작성 기준을 별도로 통보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비의 집행) ① 대학교의 장은 모든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등을 통해 중앙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관리할 수 없다.

② 사업비는 연구시설 이외의 시설비, 토지 및 건물 매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HK연구소 또는 중앙관리부서의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행위에 근거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④ 사업비의 지출은 별도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 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사업비의 규모는 당초 직접비의 2% 범위 내로 한다.

⑤ 사업비 집행은 전문기관에 제출한 연도별 사업비집행계획,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HK사업 세부시행계획」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이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이 처리규정에서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학)칙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⑥ HK교수 인건비는 교비회계(국공립대의 경우 기성회계 포함)를 통해 대학 본부가 직접 집행한다.

제43조(국고지원금) ① 장관은 제39조제1호의 국고지원금을 10년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차 및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국고지원금의 지출항목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및 「HK사업 세부시행계획」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따른다.

제44조(대응 부담금) ① 대학교의 장과 연구소장은 제3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대응부담금을 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금액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② 대학교 대응부담금에 대하여는 간접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③ 대학교의 장은 대응부담금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의 사용용도 이외에 사업목적에 필요한 적정한 집행항목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교의 장이 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해당연도의 대응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 국고지원 사업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제37조에 따라 주의·경고 조치를 부과하거나 및 제30조에 따라 협약해약을 할 수 있다.

제45조(항목 간 예산 변경) ① 연구소장은 항목 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은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당초 직접비의 20%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단계 1차년도에 한하여 인건비(HK연구인력 공개채용 기간의 미사용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단계 2 ~ 3차년도는 전문기관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6조(사업비 이월 허용 범위) ① 대학교의 장은 사업비를 매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 집행 후 잔액

을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고지원금은 당해 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10%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HK참여인력 채용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 1차년도 및 전문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대학교 대응부담금은 당해 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더한 금액의 20%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 1차년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국고지원금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⑤ 대학교의 장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또는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월액과 이월액 집행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은 사업비의 회계기간 내 집행 실적 및 이월 정도를 조사하여 제37조에 의한 주의 및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7조(예금 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대학교의 장은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소별 국고지원금의 이자발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미리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HK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기타 기술료 등의 과실은 관계 법령 및 관계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 ① 대학교의 장은 국고지원금 및 대학교 대응부담금을 연구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교의 장은 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을 총 사업 기간 종료 시 전문기관에 반납한다.

③ 대학교의 장은 소속 연구소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 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홈페이지 운영 등) ① 연구소장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연구소 현황, 사업 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내역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역 연구소장은 해당 지역의 기초 및 전문자료 D/B를 구축하고 정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50조(보고 의무) 대학교의 장과 연구소장은 장관 및 전문기관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정보의 공개)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대학교 및 연구소의 현황, 사업계획서 및 운영 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2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이 미진할 시 인문한국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주의 또는 경고), 협약해지, 사업비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부칙<2009.6.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대체) 이 지침 시행일 이전의 HK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고, 요령, FAQ, Q&A, 기타 안내 사항 등은 이 지침으로 대신한다.

부칙<2010.11.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 체결된 협약에 대한 특례) 2010년 10월 15일 이전에 한국연구재단과 인문한국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연구소에 대하여는 제24조 제6항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 단계 협약 체결 시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1.09.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지침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 단, 제14조 제2항 및 제42조 제6항은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준비 기간을 둔다.

②2011년도 신규 선정 연구소는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연구에 전념하도록 면제할 수 있다.

부칙<2014.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인문한국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인문한국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